

#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 의 자 : 정혜영 의원

## 1. 제안이유

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실행계획 수립 및 사용 활성화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재정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,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.
3.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

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행계획 수립 등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
2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
3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
4. 친환경 소재 제품의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

제6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)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하남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
2.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3.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

####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 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25. 3. 25.] [법률 제20859호, 2025. 3. 2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### 2 환경정책기본법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26호, 2024. 12. 31., 타법개정]
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

###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4. 6. 25.] [대통령령 제34600호, 2024. 6. 25., 일부개정]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7. 현수막: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